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FAQ

※ 질문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구분	연번	내용
신청자격	1	창업팀 유형별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2	1인으로 구성된 창업팀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3	대표 혹은 팀원이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4	대표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5	대표가 임대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했었는데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7	본 사업과 타 창업지원사업을 병행할 수 있나요?
	8	(예비)사회적기업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9	직장인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10	학생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11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신청	12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13	창업팀 유형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14	꼭 창업팀 대표가 신청해야 하나요?
	15	법인이 공동대표인 경우 창업팀 대표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16	사업 참여 도중 창업팀 대표 변경이 가능한가요?
	17	대표의 친·인척을 팀원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18	창업지원기관은 1개소만 선택해야하나요? 추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19	서류심사 면제 대상인 경우도 사업신청을 해야하나요?
제출서류	20	사업자사실증명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나요?
	21	사업자사실증명서류는 창업팀 대표만 제출하면 되나요?
	22	비영리단체에서 급여성 대가를 받지 않고 있음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23	사업계획서 양식을 꼭 지켜야하나요? PPT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24	사업계획서 작성분량의 제한이 있나요? 이미지를 삽입해도 되나요?
	25	[인증전환형] '25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26	[재도전형] 실패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선정심사	27	심층면접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8	대면심사시 반드시 창업팀 대표가 발표에 참여해야 하나요?
사업수행	29	창업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0	반드시 법인으로 창업해야 하나요?
	31	본 사업에 참여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 되는 건가요?
	32	(예비)사회적기업은 무엇이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자격

1. 창업팀 유형별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본 사업은 창업팀 '대표'의 사업자 보유 여부 및 업력,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 참여이력 등에 따라 신청가능한 유형이 다릅니다.

유형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
초기 창업형	① 대표가 창업하지 않은 경우(사업자 미보유) ② 대표가 5년 미만*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 사업자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 사항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창업팀 대표는 해당 사업자 이외의 다른 개인·법인사업자 또는 단체의 임원일 수 없음(모집 공고문 5쪽 참고)
인증 전환형	대표가 5년 초과* 법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사회적목적 중심의 정관 및 조직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매출, 고용, 서비스 등 사업실적을 보유한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재도전형	'11~'23년 육성사업 협약종료시점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졸업팀 중 아래 실패경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실패경험①) '25.12.31.기준 육성사업을 통해 설립한 법인 폐업 - (실패경험②) 육성사업을 통해 설립한 법인의 재무제표상 3년 연속적인('23~'25년) 당기순손실 또는 자본잠식 발생 단, 육성사업을 통해 '재도전창업팀('18~'22년)'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본 사업 '재도전형'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제한됨

※ 자세한 세부 참여요건은 모집 공고문 참조

유형별 신청자격 외, 공통 신청자격(대표 포함 2인 이상으로 창업팀 구성)을 충족하고 '신청 및 선정제한 대상'(모집 공고문 5~6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2. 1인으로 구성한 창업팀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반드시 대표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창업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3. 대표 또는 팀원이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를 여러개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사업자(개인·법인) 보유 여부 및 개수에 따라 창업팀 '대표'로의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태	창업팀 대표	창업팀 팀원
사업자 미보유	신청 가능(인증전환형 제외)	신청 가능
사업자 보유	신청 가능 - 해당 사업자로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창업을 준비하고 신청서류(사업계획 등)를 작성하여야함 - 본 사업에 신청한 사업자 외 타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모집 공고문 5쪽 참고)	신청 가능

※ 자세한 세부 참여요건은 모집 공고문 참조

대표의 사업자 보유 현황은 '총사업자등록내역'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와 같은 서류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팀원의 사업자 보유 현황은 최종선정팀에 한해 추후 확인할 예정입니다.

4. 대표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을 신청하려는 사업자 외 별도의 비영리단체(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경우는,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본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대표가 임대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를 보유했더라도 본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했었는데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성사업에 '대표'로 참여한 자는 재참여가 일부 제한되며, '팀원'으로 참여한 자는 본 사업의 신청자격 충족시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유형	육성사업에 대표 로 참여한 자	육성사업에 팀원 으로 참여한 자
초기창업형	신청 불가능 - (예외)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양호'를 받은 '23년 예비창업팀의 대표(육성사업을 통해 설립한 법인 및 대표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인증전환형	신청 불가능	
재도전형	신청가능 - 단, 재도전형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본 사업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11~'23년)은 '졸업팀'으로 분류되므로 창업지원기관에서 졸업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멘토링, 네트워킹 등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7. 본 사업과 타 창업지원사업을 병행할 수 있나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화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본 사업과 타 창업지원사업 간 중복되는 협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예상협약시점: '26.6월말)

또한, 본 사업 선정 후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타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팀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 선정 후 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 주관기관(예: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중복여부를 판단하므로 해당 주관기관에 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비)사회적기업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본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공고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받은 상태에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공고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신청제한이 없으나, 창업지원기관은 선정심사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의지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직장인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직장인도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장의 내부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근로자의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본 사업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피해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기관장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학생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학생도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은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11.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용의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명의의 통장개설과 계좌 거래가 가능하고 법인설립 및 등기 등의 창업활동이 가능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단,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창업팀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최종선정 후 협약을 체결했다라도 선정을 취소합니다.

※ 창업지원금은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므로,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통장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계좌 잔금이 압류되는 경우 등은 본 사업 참여 불가

2. 사업신청

12.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우편, 창업지원기관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마감 전까지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을 통해 최종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모집 공고문 15쪽(별첨자료) 참고

13. 창업팀 유형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 이상 창업팀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오. 신청시 3개 유형(초기창업형, 인증전환형, 재도전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신청유형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창업팀 구성원(대표 포함)이 2개 이상의 창업팀에 소속하여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에 해당하여 신청무효,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팀에게 있습니다.

14. 꼭 창업팀 대표가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창업팀의 대표가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 회원가입하여 직접 사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가 사업자(개인·법인)를 보유한 경우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시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5. 법인이 공동대표인 경우 창업팀 대표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법인사업자가 공동대표로 구성되었더라도, 본 사업에는 창업팀 대표 1명을 선택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16. 사업 참여 도중 창업팀 대표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단, 변경될 대표는 본 사업 운영지침 및 모집 공고문에 따른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7. 대표의 친·인척을 팀원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네. 창업팀 대표의 친·인척을 팀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친인척으로만 창업팀을 구성하는 경우, 창업지원기관에서는 선정심사 과정에서 팀원의 실질적인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창업지원기관은 추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1개의 창업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창업지원기관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에 해당하여 신청무효,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팀에게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6-0022호(2026.3.30.)에 의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에 따라
창업팀의 대표 또는 팀원으로 '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정결과와 무관히 본 모집에 중복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19. 서류심사 면제 대상인 경우도 사업신청을 해야하나요?

서류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모집기간 내 신청서 및 면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서류심사 면제 관련 세부사항은 모집 공고문 12쪽 참고

3. 제출서류

20. 사업자사실증명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나요?

신청자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사실증명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 여부 및 이력에 따라 발급 가능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구분	발급서류명	발급용도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총사업자 등록내역	현재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사업자등록 및 폐업한 이력 확인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

발급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인정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선택하여 발급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시 기업 공동인증서가 아닌 창업팀 대표 개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발급 가능
- 발급에 3시간 내외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시를 고려하여 발급

21. 사업자사실증명서류는 창업팀 대표만 제출하면 되나요?

네, 사업 신청단계에서는 창업팀 대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최종선정 창업팀은 팀원도 해당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며, 추후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22 비영리단체(법인)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있음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비영리단체(법인)에서 임원(대표 포함)으로 재직중에 있으나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기재된 공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별도 양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유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23. 사업계획서 양식을 꼭 지켜야 하나요? PPT로 제출하면 안 되나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사업계획서 양식을 지정하고 있으며, 별도 양식(PPT 포함) 활용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4. 사업계획서 작성분량의 제한이 있나요? 이미지를 삽입해도 되나요?

사업계획서 항목별로 분량(쪽수) 제한이 있으므로 준수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을 준수하는 선에서 심사위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 도표 등 삽입이 가능합니다.

25. [인증전환형] '25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결산 재무제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법인의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입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본 사업 신청시 '원클릭 구비서류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발급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모집 공고문 15쪽의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 [재도전형] 실패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재도전형은 육성사업을 통해 설립한 법인을 폐업하거나(~'25.12.31.)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상 연속적인 당기순손실 또는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23~'25년) 재도전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별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 ② 당기순손실 또는 자본잠식: '23~'25년 결산재무제표
 - '25년 결산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회계/세무사무소를 통한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이 때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원을 필수로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선정심사

27. 심층면접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심층면접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교육, 담임멘토와의 인터뷰, 멘토링, 면접 등 창업지원기관별로 상이합니다.

4시간 내외로 진행되며 창업팀 대표는 전체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층면접 점수는 최종선정 심사시 점수에 20% 반영 됩니다.

28. 대면심사시 반드시 창업팀 대표가 발표에 참여해야 하나요?

대면심사 운영방식 및 일정, 발표자료 양식 및 제출방법 등은 창업지원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세부내용은 창업팀 모집 신청 마감 후, 선정된 기관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5. 사업수행

29. 창업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창업지원금은 선정 후 창업팀 유형별 최초 협약금액에 따라 협약을 체결합니다.

* 최초 협약금액: 초기창업형 2,500만원 / 인증전환형 1,000만원 / 재도전형 2,000만원

이후 시행되는 중간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최종 지원금액은 최초 협약금액을 포함하여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배정 되며, 창업팀 유형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창업팀 유형별 평균 및 최대 지원금액>

①초기창업형	②인증전환형	③재도전형
평균 5,000만원	평균 2,000만원	평균 4,000만원
최대 8,000만원	최대 3,000만원	최대 6,000만원

창업지원금은 진흥원에서 별도 안내하는 교부기준에 따라 사전에 일정기간 예정 집행금액을 신청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교부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0. 본 사업을 통해 반드시 법인으로 창업해야 하나요?

네,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을 개시(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창업팀 최종평가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상 성과목표 기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달성하여야 하며, '미흡'으로 평가된 창업팀은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팀 성과목표 및 평가등급>

평가등급	성과목표
우수	- 협약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완료
양호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 충족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완료 * 단,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고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양호로 평가
미흡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로의 창업에 실패하거나 창업 후 영업활동 미수행 - 휴·폐업 등 협약기간 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1. (예비)사회적기업은 무엇이고 진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

사회적기업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령	조례 또는 규칙, 지침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주관	광역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① 조직형태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상시 접수	신청	연중 일정 공고

요건별 세부적인 내용, 신청일정 등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인지도 지정 일정 및 안내 모
[아보기 - 공지사항 | 상세](#)

32. 본 사업에 참여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본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위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인증(지정) 요건을 갖추어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의 공고에 따라 별도의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